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0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에 따라 세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 (안 제7조제2항)
- 나.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 (안 제8조제2항)
- 다.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,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 (안 제9조제3항)
- 라.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,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는 조항 개정(안 제13조제3항)

- 마.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한다는 조항
개정(안 제18조)
- 바.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(2명), 지방의회(3명), 이사회(2명)가
추천한 7명으로 구성 (안 제19조)
- 사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기업 정관으로
규정(안 제24조)
- 아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일부 표현 정비

3. 개정근거

- 지방공기업법 (2009.4.1 법률 제9575호 개정)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1736호, 2009.9.21 개정)
- 지방공기업 설립 · 운영기준 개정 통보(서울시 재정담당관-10331호,
2009.9.29)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0. 3. 4. ~ 3. 24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10. 4. 1)
- 다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- 라. 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“를 “「지방공기업 법」”으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단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13호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의결을 거쳐”를 “의결을 마친 후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이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
2.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3.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
제9조제1항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관에 따라”로 한다. 제2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“포함 되어야 한다.”를 “포함되어야 한다.”로 한다. 제3항 중 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”를 “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.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한다. “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.”

제11조제1항제6호 중 “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”를 “법원의 판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”를 “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”로 한다. 같은 조 제5항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장명 “이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공단은 법 제58조제3항, 제6항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“2명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4급 이상 공무원”을 “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”으로 하며, 제4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공단”으로 “이사장”을 “임원”으로 “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”를 “구청장과 구의회”로 한다.

제21조 본문 중 “이사장”을 “임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구청장이”를 “공단의 이사회에서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구의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”을 “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 제목 중 “이사장후보”를 “임원후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”를 “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의 “이사장후보”를 “임원후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”를 “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구청장,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이사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”으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, “이사장후보”를 “임원후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이사장후보”를 “임원후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”

제25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이사장후보”를 “임원후보”로 하고 “기타 관계기관”을 “그 밖의 관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6항 중 “구의 공공용청사”를 “구의 공공용 청사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영”을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매사업연도의”를 “매 사업연도의”로 “40일전까지”를 “40일 전까지”로 제3항의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공단운영에”를 “공단 운영에”로,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제3항 중 “2월이내에”를 “2월 이내에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종료후”를 “종료 후”로 제2항 중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임하여”로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예산내의”를 “예산 내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해당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3호 중 “그 밖의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요청에 의하거나”를 “요청에 따르거나”로 제2항 중 “임용령에 의하여”를 “임용령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5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장은 영 제44조의2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비치”를 “갖춰 두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… 「지방공기업 법」</p> 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…</p>
<p>제2조(법인격)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법인격)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.</p>
<p>제3조(사무소) ① (생략)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3조(사무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p>
<p>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,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제4조(자본금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</p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관) ① (생략) 1 ~ 12. (생략) 13.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	제5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1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그 밖에 ② 마친 후
제7조(임원) ① (생략) ②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	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(이사장) ① 공단의 이사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임면하되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<u>이사장 추천위원회</u> 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	제8조(이사장) ① 임원 <u>추천위원회</u>
<u>〈신설〉</u> 다만,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
<u>〈신설〉</u>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
1.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의 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	
2.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	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생략) 1. ~ 5. (생략) 6. <u>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</u> <u>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</u> ② (생략) ③ (생략)	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법원의 판결에 따라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이사회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</u> <u>이 된다.</u>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<u>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</u> <u>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	제13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</u> <u>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</u> <u>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u> <u>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</u> <u>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</u> <u>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u>
④ (생략) ⑤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</u> <u>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</u> <u>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⑥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⑥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직원의 임면) 공단의 직원은 <u>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</u> 이사장이 <u>임면한다.</u>	제17조(직원의 임면) <u>정관에 따라</u>
제3장 <u>이사장추천위원회</u>	제3장 <u>임원추천위원회</u>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구청장은 법 <u>제58조제3항 및 제76조에 따라</u> <u>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</u>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</u> <u>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</u> <u>설치·운영한다.</u>	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공단은 법 <u>제58조제3항, 제6항 및 제76조에 따라</u> <u>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</u>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</u> <u>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</u> <u>설치·운영하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</u> (이하 "구의회" 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<u>2명</u> 3.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<u>3명</u> 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4급 이상</u>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. ~ 5. (생략) ③ (생략) ④ 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 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</u> <u>3명</u> 3. <u>2명</u>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4급 이상</u>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단은 임원 <u>임원</u> <u>구청장과</u> <u>구의회</u> 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<u>이사장</u> 후보로 추천된 자가 <u>이사장</u> 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	제21조(위원회의 존속) <u>임원</u> <u>임원</u>
제2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. ② (생략) ③ (생략)	제22조(회의) ① 공단의 <u>이사회</u> 에서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간사) ① (생략) ② 간사는 <u>구의</u>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. ③ (생략)	제23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)	제24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)
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	①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
② 위원회는 <u>이사장후보</u> 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	② <u>임원후보를</u>
③ 위원회는 <u>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</u>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	③ <u>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</u>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구청장,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이사장
④ <u>구청장은</u>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<u>이사장후보</u> 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<u>지체없이</u> <u>이사장후보</u> 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.	④ <u>구청장 또는</u> 공단이사장은 <u>임원 후보</u> <u>지체 없이</u> <u>임원후보를</u>
⑤ 위원회는 <u>이사장후보의</u>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	⑤ <u>임원후보의</u>
〈신설〉	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제25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5조(실비보상)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사무협조) ① 위원회는 <u>이사장 후보</u>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, 공단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(사무협조) ① <u>임원 후보</u> <u>그 밖의 관계기관</u></p>
<p>제27조(사업) (생략)</p> <p>1.~5.(생략)</p> <p>6. 구의 <u>공공용청사</u>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</p> <p>7.~8. (생략)</p>	<p>제27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5.(생략)</p> <p>6. ... <u>공공용 청사</u></p> <p>7.~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<u>의한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2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<u>따른다</u>. ② (현행과 같음) ③「<u>지방공기업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</p>
<p>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공단의 이사장은 <u>매사업연도의</u>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<u>40일전까지</u>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<u>매 사업연도의</u> <u>40일 전까지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지체 없이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수입 및 정산) ① (생략) ② <u>공단운영에</u>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재원</p> <p>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<u>2월이내에</u>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,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.</p>	<p>제32조(수입 및 정산) ① (생략) ② <u>공단 운영에</u> 1.~2. (생략) 3. <u>그 밖의</u> ③ <u>2월 이내에</u> </p>
<p>제33조(결산)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<u>종료후</u>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<u>지체 없이</u>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3조(결산) ① <u>종료 후</u> ② <u>붙임하여 지체 없이</u>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일시차입금) ① 공단은 <u>예산내의</u>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,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8조(일시차입금) ① .. <u>예산 내의</u> ② <u>해당 연도</u></p>
<p>제39조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그 밖의</u>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</p>	<p>제39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</p>

